거창군지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42

제출일자	2003. 9.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는 군 세입금중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실제 지급시 규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체납연도별, 체납액사유별로 차등지급하지 않고 체납징수액의 100분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데 대해 지적한 바 있어, 이를 반영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부정 또는 착오지급시 환수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급대상 개정**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합동징수시 타부서근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한 자에 대해서는 1건당 30만원~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2조)

○ **지급기준 개정** :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연도별로 차등지급 ⇒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3,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은 100분의 5로 지급토록 개정함. (안 제3조)

○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 시효소멸 잔여기간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까지 차등지급함 (안 제4조 신설)

○ **지급한도액 신설** :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제3조(지급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차등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함 (안 제5조)

○ **지급방법 개정** : 포상금 수령자가 금융기관(체신관서)에 개설한 수령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토록 개정함(안 제9조)

○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규정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 개정근거

○ 경상남도세징수포상금신청(경남 세정13410-11470 : 2002.11.26)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체납징수금(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등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누락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동안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되며,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방세의 탈루세원을 발굴 부과한 경우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2.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사용한 자,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발견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결손처분된 미수액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법 제30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체납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체납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체납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 (지급한도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부과액 또는 체납징수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6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 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안 방법은 거창군제안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읍·면 공무원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지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수납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단위: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계장)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비고
	직급	주소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신문용지 54g/㎡
268㎜×190㎜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제2호서식>

숨은세원 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부과·징수일자		담당주사확인	포상금지급		
	직급(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과	징수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신문용지 54g/㎡
268㎜×190㎜

<별지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징수 (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 명	주민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문용지 54g/㎡
190㎜×2658㎜

※ 1.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위와 같이 포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신청자 소 속 :
직 : 성 명 : (인)

거창군수 귀하